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23.12. 13.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맹의 자문에 응한다.

1. 등급분류의 국제동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등급분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 및 국내 자격취득 지원 등 등급분류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종목별 등급분류사의 자격제도, 양성, 운영 등 제도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등급분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연맹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3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정관에 준한다.

부 칙('2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